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8px;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제753호 2020. 6. 3.(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규 칙

제1291호 거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

고 시

제2020-66호 도로명주소 고시 4

공 고

제2020-773호 인평교 재가설공사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 6
 제2020-782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9
 제2020-785호 거창군계획시설(문화시설:문화산업단지)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관련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11
 제2020-788호 거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4
 제2020-789호 공시송달 공고문 19

회 램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0년 6월 3일

거창군 규칙 제1291호

거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관서란에 “6. 읍·면”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0-32
----------	---------

제출연월일	2020. 5. 27 .
제 출 자	재무과장

1. 제안이유

위임행정규칙인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만 전부개정하여 시행(2020. 5. 6.) 중인 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출원이 설치된 제1관서에 읍·면 신설함(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생략함

나)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입법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6. 3.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창남4길 46-2 등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2)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373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행로 352-96			행정구역명(월포+행정) 반영	
2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256-1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가북로 703-12			가북으로 가는길로 불려진 것에서 유래	
3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850-1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거기1길 44-14			거기라는 자연마을 이름을 반영한 첫번째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울리 84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풍계2길 30-322			위천에서 내려오는 영천과 모동에서 내려오는 냇물경이 합류하여 하폭이 넓고 수량 이 풍부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5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하고리 577-9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세동길 13-17			마을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 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6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1355-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1길 9			동례길의 시점으로부터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684-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개화2길 121-20			철의 꽃이 핀다고 하여 유래된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창남4길 4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창남4길 46-2			창남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네번째 도로	
9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평길 18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평길 22			들 가운데 새로 생긴 마을이라 붙여진 옛지명이 반영된 도로	

거창군 공고 제2020 -773호

인평교 재가설공사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거창군에서 시행예정인 『남상 인평교 재가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사업인정에 대한 협의 및 의견청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거 창 군 수

1.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거창군수(건설과장)
- 나.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 업 명 : 인평교 재가설공사
- 나. 위 치 :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원봉계마을 일원
- 다. 사 업 량 : 교량 재가설 L=54.6m, 접속도로 정비 1식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679-21번지 일원
-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4.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
⇒ ☎055-940-3552
-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 결과 개별통지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인이상(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거창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후 보상금 지급

【단,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 → (협의불성립 시) 공탁

7.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나.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토지조서

연 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m ²)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대장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합계				72,599	2,879					
1	남상면 무촌리	697-21	과	331	223		거창군			국
2	남상면 무촌리	697-16	전	823	73	남상면 무촌리 697-6	문남식			
3	남상면 무촌리	697-15	천	1,249	39	남상면 무촌리 697-3	오상균			
4	남상면 무촌리	697-5	도	360	135		거창군			국
5	남상면 무촌리	697-2	제	1,724	138	남상면 인평길 82	문남식			
6	남상면 무촌리	697-26	제	341	74	남상면 인평길 93	오상문			
7	남상면 무촌리	697-23	제	1,039	73		경상남도			국
8	남상면 무촌리	697-24	제	860	22		경상남도			국
9	남상면 무촌리	359	천	52,669	1,365		건설부			국
10	남상면 무촌리	1855-28	제	7,651	197		건설부			국
11	남상면 무촌리	697-29	천	380	274		거창군			국
12	남상면 무촌리	1855-93	구	41	26		경상남도			국
13	남상면 무촌리	1855-111	구	38	19		국토부			국
14	남상면 무촌리	1855-92	도	103	103		경상남도			국
15	남상면 무촌리	1855-110	도	81	81		국토부			국
16	남상면 무촌리	1855-90	잡	2,924	20	남상면 무촌리 697-3	오상균			
17	남상면 무촌리	1855-91	답	1,985	17		국토 교통부			국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제2항(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28.

거 창 군 수

- 1.공고명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2.공고기간 : 2020.06.03.~ 2020.06.17.(15일간)
- 3.대상차량 : 7대(붙임 참조)
- 4.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하였으며, 해당 자동차는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나. 자동차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7의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2의2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자동차는 직권말소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 055-940-3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대상

순번	차량번호	차명	모델연도	운행정지사유	운행정지일자
1	52도7756	베르나	2001	기타	2020. 3. 25.
2	35누5666	A4 2.0 TFSI Quattro	2010	기타	2020. 3. 27.
3	39더2416	카이엔 S	2011	기타	2020. 3. 31.
4	28더8416	BMW 520d xDrive	2014	기타	2020. 3. 31.
5	50부6997	원스톼2.0S디젤2WD AT 7인승	2007	기타	2020. 4. 9.
6	69고7461	SM7	2007	범죄집단(브로커)의 현금확보를 위한 의도적인 발생	2020. 4. 9.
7	부산30너5705	옵티마	2002	범죄집단(브로커)의 현금확보를 위한 의도적인 발생	2020. 4. 23.

거창군계획시설(문화시설:문화산업단지)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관련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복합문화단지 주차장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문화시설:문화산업단지)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 5. 30.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 개요

종 류	명 칭	위 치	시행규모(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결정면적	금회시행		
군계획시설 (문화시설)	복합문화단지 주차장 확장사업	거창읍 장팔리 9번지 일원	60,224.0	5,348.0	경고제317호 (1999.12.15.)	

2.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거창군수(문화관광과장)
- 명 칭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2개월간

4.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5.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7.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열람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서식)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

○ 성 명 :

○ 연 락 처 :

○ 기타 참고사항.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5,348	5,348					
1	거창읍 장팔리	9	전	1,015	1,015		거창군			
2	거창읍 장팔리	9-2	전	1,722	1,722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62번길 12, 105동 503호(녹양동, 힐스테이트)	박문영			
3	거창읍 장팔리	9-4	전	119	119	거창군 거창읍 김천동 72	이남근			
4	거창읍 장팔리	9-5	전	360	360		거창군			
5	거창읍 장팔리	9-6	전	96	96	거창군 거창읍 김천동 355	신의정			
6	거창읍 장팔리	9-7	전	112	112	김천동	박봉수			
7	거창읍 장팔리	9-8	전	440	440	김천동	박봉수			
8	거창읍 장팔리	9-9	전	810	810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내당길 100-14	유영미			
9	거창읍 장팔리	213-1	전	674	674	거창군 거창읍 김천동 246	정차수			

거창군 공고 제2020-788호

「거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1일

거창군수

거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 이유

- 전국 전문신고자의 증대로 정보공개청구 과다 및 연초의 중복신고로 비효율적인 업무방식 개선
- 포상금 지급 조건을 거창군 주소 주민으로 하여 거창군민에게 기회 확대

2.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 조건 추가 신설(신고자의 거주지 제한)

3. 개정 규칙안: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인구교육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거창군 인구교육과
- 우편번호: 51030, 전화: 055-940-8702, 팩스: 055-940-8709
이메일: yangda00@korea.kr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문 추가 게재: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거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20 ~
----------	--------

제출연월일	2020. 5. .
제 출 자	인구교육과장

1. 개정이유

- 전국 전문신고자의 증대로 정보공개청구 과다 및 연초의 중복신고로 비효율적인 업무방식 개선
- 포상금 지급 조건 추가 신설로 거창군민에게 기회 확대

2.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 조건 추가 신설(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49조(신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6. 1. ~ 6. 20.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사유서: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고자가 신고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위반행위를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으로,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지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해당 연도에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p><u><신설></u></p>	<p>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위반행위를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으로,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지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해당 연도에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u>신고자가 신고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u>

관 계 법 령

□ 「청소년보호법」 제49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3.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8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및 제77조의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 안내문, 부과지서, 자동차 검사명령서, 건설기계 정비명령서, 건설기계검사지시 최고 통지, 압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검사유효기간 경과 차량은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자동차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사업소에서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1항에 의거 직권말소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건설기계 직권말소, 검사안내 및 위반자 우편통지서 반송분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 2020. 6. 1. ~ 2020. 6. 30.
3. 공고대상 : 64건(붙임내역 참조)
4. 문 의 처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3)

2020년 6월 1일

거 창 군 수